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종아동등의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 관련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u>무연고아동</u> ② ~ ⑥ (생략) <u><신설></u>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무연고 아동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u>

현행	개정안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략) <u><신설></u>	<u>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민법」 제781조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의 연도별·지역별 등록 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제출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2. 주요 검토사항

- 유전자 검사 등 과학 수사의 발전과 CCTV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등¹⁾ 신고 건수는 2020년 19,146건, 2021년 21,379건, 2022년 26,416건, 2023년 25,628건, 2024년 25,692건이고, 1년 이상 연락이 안되는 장기실종 아동 등도 2024년 12월 말 기준 1,400명이 넘는 실정임.

<실종아동등 발생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아동	인구수	7,928,907	7,710,946	7,483,944	7,271,460	7,077,206
	신고접수	19,146	21,379	26,416	25,628	25,692
	미발견	4	5	58	8	14
지적장애인 등 (연령불문)	인구수	344,594	351,435	359,421	367,735	376,721
	신고접수	7,078	7,166	8,344	8,440	8,430
	미발견	6	7	29	42	41
치매 환자 (연령불문)	인구수	612,724	629,142	671,844	707,341	750,667
	신고접수	12,272	12,577	14,527	14,677	15,502
	미발견	3	9	12	23	16

* 자료 : 경찰청

*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현시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실종 기간별 현황>

(2024. 12월 말 기준)

구분	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 이상
아동	1,187	64	22	11	35	1,055
지적장애인	223	41	26	18	61	77
치매 환자	129	16	30	15	50	18
계	1,539	121	78	44	146	1,150

* 자료 : 경찰청

□ 먼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의 유전자검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보호시설²⁾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을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에서 ‘아동등’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정의하고 제3조의2제1항³⁾ 및 제6조제4항⁴⁾을 제외한 모든 규정에서 ‘아동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의 유전자검사 대상에도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4) 제6조(신고 의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관련하여 경찰청은 유전자검사 대상을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무연고 아동 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발견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실종아동등의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자신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하여 살펴 봄.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과 전문기관⁵⁾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제3항⁶⁾), 전문기관의 장은 이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8조제2항⁷⁾).
- 아울러,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6조(신고의무 등) ③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7)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⁸⁾).

- 그 외, 실종아동등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⁹⁾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¹⁰⁾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실종아동등에게 자신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실종아동법 시행령」은 신상카드에 대한 열람청구권자를 실종아동등 외에 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개정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에 포함되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기아(棄兒)가

8)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발견됨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¹¹⁾한 사안의 연도별·지역별 등록 건수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제2항 신설).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정보의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법」이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자료의 협조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 법원행정처는 매년 기아발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관련 통계를 법원별로 집계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棄兒))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

1.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구분 법원	합계	출생		기아 발견	보호 출산	출신후 아동 보호	인 지		태 아 인 지	인 지 아 사	성 계 사 용	입 양		
		혼인중	혼인외				임 의	재 판				보 통	입양 특례	친양자
합계	1,418,014	239,301	14,946	20	27	12	2,301	197	43	-	7	3,420	128	983
서울지방법원	89,669	20,347	1,240	19	-	-	460	12	28	-	3	158	48	44
서울북부지방법원	39,768	8,106	541	-	-	-	46	3	-	-	-	105	-	10
서울남부지방법원	50,611	8,973	710	-	-	-	68	5	1	-	-	120	-	22
서울서부지방법원	51,771	8,300	551	-	-	-	46	9	-	-	-	12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37,070	5,647	485	-	2	3	34	12	1	-	-	96	44	43
서울고양지방법원	27,327	4,625	218	-	-	-	46	3	-	-	-	66	-	27
고양지방법원	34,967	7,391	427	-	-	-	43	3	1	-	-	108	-	21
인천가정지방법원	21,397	4,172	252	-	-	-	35	1	-	-	-	53	-	19
인천가정지방법원	83,691	16,188	897	-	-	-	124	7	1	-	-	227	-	67
인천가정지방법원	76,140	14,290	1,109	-	1	-	156	15	4	-	1	229	1	95
인천가정지방법원	29,208	5,443	306	-	-	-	31	8	-	-	-	95	-	31
수원가정지방법원	105,348	19,733	1,415	-	1	-	187	23	4	-	1	324	1	126
수원가정지방법원	78,956	19,184	1,167	-	-	-	143	6	-	-	-	236	1	76
성남가정지방법원	36,870	8,274	542	-	-	-	65	5	4	-	-	114	1	27
성남가정지방법원	13,111	1,873	100	-	-	-	22	2	-	-	-	44	-	8
성남가정지방법원	23,072	4,593	311	-	-	-	46	6	-	-	-	62	-	36
성남가정지방법원	35,563	6,669	436	-	3	-	48	3	-	-	-	82	7	27
성남가정지방법원	25,019	5,887	444	-	-	-	33	4	-	-	-	76	7	16
성남가정지방법원	212,591	46,480	3,003	-	3	-	357	26	4	-	-	615	9	190
충청남지방법원	13,186	2,063	80	-	1	-	17	3	-	-	-	21	-	13
충청남지방법원	10,643	1,300	60	-	-	-	8	1	-	-	-	30	-	10
충청남지방법원	11,607	1,895	75	-	-	-	20	3	-	-	-	38	-	11
충청남지방법원	4,242	552	10	-	-	-	1	-	-	-	-	7	1	6
충청남지방법원	5,137	338	13	-	-	-	-	-	-	-	-	4	-	1
충청남지방법원	44,815	6,148	238	-	1	-	46	7	-	-	-	100	1	41
대전가정지방법원	48,279	9,801	645	1	2	3	74	2	-	-	-	113	2	22
대전가정지방법원	12,435	1,120	50	-	-	-	12	1	-	-	-	18	-	9
대전가정지방법원	5,093	329	23	-	-	-	1	-	-	-	-	9	-	1
대전가정지방법원	8,690	709	31	-	-	-	5	1	-	-	-	22	-	5
대전가정지방법원	13,585	1,827	69	-	-	-	7	1	-	-	-	49	-	8
대전가정지방법원	26,652	5,366	368	-	2	-	49	6	-	-	-	72	1	24
대전가정지방법원	114,734	19,152	1,189	1	2	5	148	11	-	-	-	283	3	69
대전가정지방법원	29,766	5,460	277	-	1	-	36	3	-	-	-	86	1	30
대전가정지방법원	9,358	1,098	59	-	-	-	15	1	-	-	-	16	1	3
대전가정지방법원	4,682	495	21	-	-	-	4	-	-	-	-	6	-	3
대전가정지방법원	3,803	202	8	-	-	-	5	-	-	-	-	7	-	2
대전가정지방법원	47,609	7,255	362	-	1	-	60	4	-	-	-	115	2	38
대전가정지방법원	75,200	11,630	835	-	-	2	110	10	-	-	-	158	5	36
대전가정지방법원	10,016	906	34	-	-	-	7	-	-	-	-	11	-	5
대전가정지방법원	7,416	902	35	-	-	-	5	-	1	-	-	11	-	1
대전가정지방법원	13,442	2,193	83	-	-	-	19	2	-	-	-	42	-	18
대전가정지방법원	14,030	2,503	137	-	-	1	19	2	-	-	-	22	-	14
대전가정지방법원	9,271	759	28	-	-	-	10	-	-	-	-	6	-	4
대전가정지방법원	5,482	262	8	-	-	-	1	-	-	-	-	3	-	2
대전가정지방법원	4,408	274	6	-	-	-	1	-	-	-	-	9	-	4
대전가정지방법원	139,265	19,429	1,166	-	-	3	172	14	1	-	-	262	5	84
부산가정지방법원	84,040	12,421	873	-	4	-	107	8	1	-	1	210	2	47
부산가정지방법원	34,312	6,753	343	-	1	-	51	6	-	-	-	110	-	29
부산가정지방법원	27,614	5,218	289	-	-	-	33	4	-	-	1	55	-	20
부산가정지방법원	12,574	1,455	101	-	5	-	13	1	-	-	-	28	-	14
부산가정지방법원	20,170	2,237	118	-	-	-	32	8	2	-	-	20	-	8
부산가정지방법원	11,031	1,179	69	-	-	-	12	-	-	-	-	21	-	12
부산가정지방법원	6,623	402	21	-	-	-	5	1	-	-	-	12	-	5
부산가정지방법원	6,675	359	18	-	-	-	1	-	-	-	-	4	-	2
부산가정지방법원	84,687	10,850	613	-	5	-	96	14	2	-	1	140	-	61
부산가정지방법원	48,184	7,457	538	-	5	1	82	10	-	-	-	150	11	17
부산가정지방법원	14,936	1,625	100	-	1	-	14	2	-	-	-	47	-	14
부산가정지방법원	3,670	272	8	-	-	-	1	1	-	-	-	2	-	1
부산가정지방법원	25,983	3,761	172	-	-	-	29	-	-	-	-	61	-	9
부산가정지방법원	6,319	455	22	-	-	-	1	2	-	-	-	9	-	-
부산가정지방법원	99,092	13,570	840	-	6	1	127	15	-	-	-	269	11	41
전주가정지방법원	36,253	3,807	167	-	-	-	55	5	-	-	-	62	-	15
전주가정지방법원	21,374	1,960	135	-	1	-	49	4	-	-	-	36	-	16
전주가정지방법원	13,400	676	37	-	-	-	10	2	-	-	1	9	-	5
전주가정지방법원	6,525	413	22	-	-	-	38	-	-	-	-	11	-	3
전주가정지방법원	77,552	6,856	341	-	1	-	152	11	-	-	1	118	-	39
전주가정지방법원	21,369	3,093	119	-	-	-	20	10	-	-	-	40	1	15

출처: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종아동등 뿐만

아니라 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도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열람이 가능하므로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법원행정처는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기아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법률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내밀한 개인정보나 법원 통계 등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제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그 외,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는 실종아동등 당사자의 신상카드 정보공개청구 관련 조항 신설에 관한 이견은 없으나 당사자 외 가족 또한 신상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